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43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서명옥·박준태·김상훈

백종헌 • 배준영 • 박정하

강명구 · 조정훈 · 김형동

김종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·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해야 함.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·허가·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.

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·허가·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·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,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·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,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29조의4, 제29조의5, 제68조 및 제75조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 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 런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고 있는지를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 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 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.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"을 "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 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"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" 를 "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 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"로 한다.

- 1. 문화체육관광부장관: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(「문학진흥법」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)
- 2. 보건복지부장관: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,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
- 3. 여성가족부장관: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 년지원센터,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
- 4. 법무부장관: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, 소년분류심사원
-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·확인을 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,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, 아동보호전문기관, 다함께돌봄센터, 가정위탁지원센터, 아동복지시설
- 2.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,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, 가

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
- 3.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
- 4.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5.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, 성매매 피해상담소
- 6.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
- 7.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시간제보육 서비스지정기관
- 8.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
- 9.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
- 10.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- 11.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
- 12.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
- 13.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(「평생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)
- 14.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
- 15.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
- 16.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

- 17.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
- 18.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서비스제공기관
- 19.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입양기관
- 20.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
-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
- 2.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「평생교육법」 제2 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
- 3.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,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
- 4.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, 교습소
-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·확인 계획, 추진 현황,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9조의5제1항 중 "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"을 "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"을 "제29조의4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9조의4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"을 "제29조의4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"을 "제29조의4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"을 "제29조의4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"으로 한다.

제68조제1항 단서 중 "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소방청장"을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"으로 한다. 제75조제4항 중 "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"을 "제26조, 제29조의4,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 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했 혀

개 아 정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 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 검 · 확인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 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 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 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.

- 제7호 제8호 제18호 제19 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
- 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: 제29조 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 관련기관
- 3. 보건복지부장관: 제29조의3 제1항제1호·제9호·제10호· 제11호 • 제23호 • 제25호 • 제2 6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

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 검·확인) ① -----

--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 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를 제공하고 있는지를------

- 1. 교육부장관: 제29조의3제1항 1. 문화체육관광부장관: 제29조 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 시설(「문학진흥법」 제18조 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 다)
 - 2. 보건복지부장관: 제29조의3 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 원,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 법인
 - 3. 여성가족부장관: 제29조의3

- 4. 여성가족부장관: 제29조의3 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 <u>제1항제2호·제3호·제4호·</u> 제5호 • 제6호 • 제13호 • 제14 호·제15호·제16호·제20호 • 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 관
- 5. 국토교통부장관: 제29조의3 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 기관
- 6. 법무부장관: 제29조의3제1항 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<신 설>

<신 설>

- 배경청소년지원센터,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 센터
- 4. 법무부장관: 제29조의3제1항 제22호의 소년원, 소년분류심 사원

-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 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 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제1항에 따른 점검 • 확인을 하여야 한다.
- ③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 수・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 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

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,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, 아동보호전문기관, 다함께돌 봄센터, 가정위탁지원센터, 아 동복지시설
- 2.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
 전화센터, 가정폭력 관련 상
 담소,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
 설
- 3.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 <u>가정지원센터</u>
- 4.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 화가족지원센터
- 5.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 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, 성매매피해상담소
- 6.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 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자통합

지원센터

- 7.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 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시간 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
- 8.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 기관
- 9.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 애인복지시설
- 10.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 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 진시설, 정신요양시설, 정신 재활시설
- 11.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 동주택의 관리사무소
- 12.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 소년시설, 청소년단체
- 13.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 소년활동시설(「평생교육 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 기관은 제외한다)
- 14.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 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쉼 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 년치료재활센터
- 15.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 육시설

<신 설>

- 16.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
- 17.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 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
- 18.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서 비스제공기관
- 19.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입 양기관
- 20.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 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 용하는 기관
-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・확인하여야한다. 다만,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·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·확인 결과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2.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
 소년활동시설 중 「평생교육 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 기관
- 3.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
 교,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
 육을 실시하는 기관
- 4.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 원, 교습소
-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----

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

-----.

<신 설>

제29조의5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 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다.

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 <u>앙행정기관의 장은</u> 아동관련기 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 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 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· 확인 계획, 추진 현 황,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제29조의5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-----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-----

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 양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 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 쇄하거나 그 등록・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. 다만, 제26조, 제29조의4, 제29조의5,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소방청장의 권

③ <u>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</u>
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
<u>장,</u>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
구청장 또는 교육감은
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
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 감·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.

② (생략)

제75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 및 도의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	
제75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3	라
같음)	
4	
제26조, 제29조의	의
4,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약	싱
<u>행정기관의 장</u>	